

6 (第80回一運營第1次)

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第3代 市議員의 경우 職務로 인한 傷害, 死亡 등의 불미스런 事故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條例는 地方議會 開院時부터 制定하여 施行되는 것이 유비무한적 側面에서 마땅하다고 보여지나 지금이라도 制定하게 된 것이 다행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內務部에 地方自治法施行令 改正을 要求하였으나 지금으로서는 그 貢獻이 어려운 형편이며, 議員들이 職務上 불의의 事故를 당하는 경우 補償規定의 未備에 따른 不利益이 發生할 소지가 있으므로 補償審議會 構成 등 補償金 支給節次의 調整問題, 補償金 支給基準 上向調整 問題, 職務範圍의 擴大問題 등을 앞으로 同 制度의 運營過程을 통해 改善이 必要한 경우 自治權 確保次元에서 계속 內務部에 關聯 規定의 改正을 促求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洙福 財政企劃官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本 條例案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質疑와 財政企劃官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時間에 會議를 효율적으로 進行하기 위하여 質疑答辯을 一問一答式보다는 委員님 별로 一括質疑 후 答辯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委員님 별로 一括質疑 後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關한 條例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결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제 3 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 4 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 ②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p>다.</p> <p>제 5 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p> <p>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 6 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p>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일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p> <p>제 7 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p> <p>제 8 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이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p> <p>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p> <p>제 9 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의원중 1인 2. 관련 실·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p>자 1인</p> <p>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p>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 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p> <p>②간사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8 (第80回一運營第1次)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	처 리 기 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보상금 청구내역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의회	〈결정〉 〈결정이유〉			
심의결과	〈심의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